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쟁점과 정책 시사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쟁점 1) 사무를 어디로 이양할 것인가?

- 5극 3특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은 주로 광역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

■ (쟁점 2) 핵심 사무가 이양될 수 있는가?

- 정부는 지역개발 및 발전에 실효성 있는 사무보다 주로 단순 집행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

■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포함할 것인가?

- 노무현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이후 정부는 이양에 소극적

■ (쟁점 4)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보전은 가능한가?

- 제1차·제2차 일괄이양 과정에서 이양 개수가 많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 재정보전 제외

정책제언

■ (제언 1) 지자체 규모 및 역량을 반영한 차등 이양의 제도화

- 사무이양 대상의 명확화 및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특례를 안착

■ (제언 2) 단위 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 단위 사무가 아닌 관련 사무 전체를 포괄 이양하여 기능이양의 실효성 제고

■ (제언 3)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보전 기제 구축

- 지방이양교부세(가칭) 신설, 비용 산정의 정밀성을 개선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제언 4)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무이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및 이양 효과 진단을 통해 일괄이양 정례화 확립

1. 지방일괄이양법 도입 배경 및 제정과정

□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함

- 지방일괄이양법이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률들을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을 의미함¹⁾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이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첫 법률이 제정된 시기는 2020년이며,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법률이 통과되면서 총 2번의 법률 제정이 이루어짐

-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 행정자치부가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를 이유로 접수 거부
- 이후 2018년 5월경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일괄이양 법안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접수가 이루어진 후,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9일 첫 법률이 국회 통과하고, 이후 2022년 1월 25일 두 번째 법률이 통과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경과>

연도	제정 경과	비고
2004년	13개 부처 49개 법률 227개 사무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를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어 무산	-
2010년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했으나, 국회는 단일 법률 심사 관례에 따른 일괄입법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거부	-
2015년	728개 사무 124개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사를 요청했으나, 국회 특별위원회(특위)의 임기 만료 및 법안 심사권 부재로 무산	-
2018년	5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심의하기로 여야 합의. 이후 10월 19개 부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00개 사무를 이양하는 법률안이 통과 및 제정	제1차 일괄이양법
2022년	1월 25일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제2차 일괄이양법

□ 이재명 정부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은 52번 국정과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 포함됨

□ 이 연구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제시

- 특히,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특례시 등 대도시 차원의 권한 확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1) 이미 '90년대 중반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행 법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일괄적으로 개정

2. 제1차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분석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후 46개 법률 기반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 전체 이양 사무 중에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사무가 전체 사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현황>

(단위 : 개수, %)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기획재정부	1	4	1.0	보건복지부	3	12	3.0
교육부	2	15	3.8	환경부	2	5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0.5	여성가족부	1	51	12.8
국방부	1	1	0.3	국토교통부	9	70	17.5
행정안전부	6	20	5.0	해양수산부	7	135	33.8
문화체육관광부	3	26	6.5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0.8
농림축산식품부	2	2	0.5	소방청	1	1	0.3
산업통상자원부	4	22	5.5	산림청	2	31	7.8
				합계	46	400	100.0

출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2: 239-240)

□ 400개 이양사무 중에서 349개 사무는 국가→지방, 51개 사무는 시·도 → 시·군·구 이양임

- 이양된 다수의 사무는 그동안 정책결정 권한 없이 주민에 대한 행정 책임만을 부담한 기관위임사무임²⁾

<제1차 지방일괄이양 대상 사무 수행 형태 및 이양 방향>

(단위 : 개수, %)

구분	합계	수행 형태			이양 방향				
		국가 수행	기관위임 사무	시도 수행	국가→ 시도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 시군구	시도→ 시도, 대도시	시도→ 시군구
사무	400 (100.0)	96 (24.0)	253 (63.2)	51 (12.8)	242 (60.5)	57 (14.2)	50 (12.5)	27 (6.8)	24 (6.0)

출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2: 240)

- 이양 사무 중, 각종 특정지구(예: 경제자유구역 등) 내 유치원이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은 시·도가 담당하며,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은 시·군·구가 담당

2) 단체위임사무와 달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 관여가 불가하고, 위임기관의 지위 및 감독을 엄격하게 받음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목록>

구분	주요사무(소관기관)
기재부	•가격표시 명령(국가 또는 시·도 공동)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 시정 혹은 변경명령 등(시·도)
과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국방부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행안부	•급경사지 등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등록취소 등(시·도)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시·군·구)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시·군·구)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시·군·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
문화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폐업 신고 등(시·군·구)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시·도 조례)
농식품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 검사(시·도) •지자체 보조 사업 관련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시·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권한(시·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시·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시·도)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계획 신고 등(국가와 시·도)
복지부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시·군·구) •외국인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등록취소(시·도) •의료기관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수리/ 실태조사 등(시·도)
환경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 조사(국가와 시·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국가와 지자체)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시설 개선 명령(시·군·구와 교육청)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점검·확인(지자체)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에 대한 취소·변경 등 조치(국가와 시장·도지사)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변경, 휴업, 폐업 등(시·도) •측량업 등록(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국가와 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양도, 폐업신고,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시·도)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국가와 시·도)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시·군·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 권한 위탁(시·군·구)
해수부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 사무(시·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입·출항 관리(시·도)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 감독(지자체) •지방여항 지정(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개발·관리(시·도)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취소·운임·요금인가 등(시·도)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외 해역의 해양시설 신고, 변경신고, 출입검사·보고 등(시·도)

식약처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기기 •수리업자 검사명령 등(국가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청	•형식승인 받지 못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 수리· •폐기·교체 등 명령(국가와 시·도)
산림청	•산림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시·도)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시·도)

출처: 하혜영(2020)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 정부는 일괄이양의 관례화 및 실질적 이양 성과 창출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2022년 1월 25일,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총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의 261개 사무이양이 추진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기존과 다른 심의 방식으로 인해 이양 실적 저조

- 지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 반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12개 법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여 진행

<제2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국회 심의결과>

상임위원회	제출부처	법률	사무	법률안	결과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1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특례)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	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인구 100만 특례) - 독서문화진흥법(인구 50만 특례)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5	7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i>마리나항만법</i> ▶ <i>무인도서법</i> ▶ <i>수산식품산업법</i> ▶ <i>수중레저법</i> ▶ <i>항만재개발법</i>	대안 반영 폐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4	1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 만료 폐기
	중소벤처기업부	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 100만 특례)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	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 반영 폐기
	질병관리청	1	9	▶(복지부) <i>공중위생관리법</i> ▶(복지부) <i>국민건강증진법</i> ▶(복지부) <i>노인장기요양보험법</i> ▶(복지부) <i>심뇌혈관질환법</i> ▶(질병청) <i>감염병예방법</i>	
	식품의약품안전처	1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8	3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도서생태계법 ▶ 물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인구 50만 특례) ▶ 지하수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시설축진법 ▶ 환경교육법(인구 50만 특례) ▶ 환경기술산업법(인구 50만 특례)	임기 만료 폐기
	고용노동부	1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6	7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인구 50만 특례) ▶ 도시교통정비법 ▶ 물류시설법(인구 50만 특례(일부)) ▶ 여객자동차법(인구 50만 특례) ▶ 자동차관리법	임기 만료 폐기

출처: 이미애·안지선(2023: 5-6) 내용을 수정 및 보완

□ 사무이양 결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과 동일하게 해양수산부 사무 비중 높음

- 전반적으로 지난 1차 지방일괄이양에 비해 이양규모 및 사무 영향력이 축소

<제2차 지방일괄이양 이양 사무 현황>

(단위 : 개수, %)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개수	비중			개수	비중
행정안전부	1	15	12.5	해양수산부	4	56	46.7
문화체육관광부	2	7	5.8	중소기업벤처기업부	1	1	0.8
농림축산식품부	1	6	5.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9	15.8
보건복지부	3	4	3.3	질병관리청	1	9	7.5
고용노동부	1	1	0.8	공정거래위원회	1	2	1.7
				합계	16	120	100

Ⅰ 종합: 제1차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의 성과와 한계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은 확대됐으나, 실질 권한 확대는 여전히 미흡

- (성과) 총 520개 중앙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됨에 따라 형식적 차원에서 지방사무 총량은 개선
- (한계) 주민 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양 성과는 여전히 미흡(서울연구원, 2026: 292)

<제1차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비교>

구분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배경	• 국가 균형발전 및 주민 중심 행정 강화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지방일괄이양의 관례화 및 성과 제고 • 대도시 행정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 16개 부처 46개 법률 • 400개 사무의 지방이양(기관위임 사무 비율 63.2%)	• 10개 부처 16개 법률 • 120개 사무의 지방이양(기관위임 사무 비율 26.1%)
관련사무	• 항만의 개발 및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관광특구 지정 등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3.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주요 입법 쟁점

Ⅰ 제3차 지방일괄이양 제정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기반 확립 및 역량 제고
- (목적) 제1차·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자치단체, 주민 체감도 제고

□ 사무발굴 방향

- 제3차 지방일괄이양사무의 발굴 방향은 장기 미이양 사무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임(행정안전부 2025, 뉴시스, 2025.12.9)

Ⅰ 주요 입법 쟁점

□ (쟁점 1) 사무를 어디로 이양할 것인가?

- 현재 5극 3특 정책적 기조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은 주로 광역 시·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상대적으로 일반 시·군·구, 대도시에 대한 권한이양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
- 향후 지방일괄법제정 논의 과정에서 권한이양 대상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권한이양 대상 설정 시, 자치계층(시·도 및 시·군·구)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도시 규모(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 맞춰서 할지를 결정해야 함

<지방이양 방식 및 대상 지역에 따른 유형 구분>

구분	일반지역		특별히 고려되는 지역			
	시도	시군구	대도시 특례		특별자치시·도 특례	인구소멸 지역 특례 등
			인구50만 이상	인구100만 이상		
균등 이양	개별 이양	이양완료 사무 2,489개	-	-	-	-
	일괄 이양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400개 사무	지방자치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 등
차등 이양	맞춤형 특례	지자체 발굴·건의·협의	의견수렴(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각 특별법 명기	시군구 특례에 포함

출처: 주희진 외(2024)에서 재인용

□ (쟁점 2) 핵심 사무가 이양될 수 있는가?

- 지방일괄이양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할 것인가임
-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 대부분이 지역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기획·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보다는

집행사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단위사무 위주의 단편적 이양이 아닌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중앙정부의 이양사무 유형>

구분	개수	비중
정책·기획	100	3.7
조사	32	1.2
집행	2,334	86.9
평가	12	0.4
기타	208	7.7
합계	2,686	100.0%

출처: 홍준현 외 (2023). 지방이양 완료사무 현황 및 성과평가체계 연구

□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포함할 것인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을 얼마만큼 지방으로 이양하는가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도가 좌우됨
- 노무현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본격 이양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양 실적 부진
-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역 시도지사들은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권한이양을 공동 건의함
- 향후 정부가 시도지사가 요청한 분야의 사무를 이양할 것인지, 이양한다면 각 분야별로 어떠한 사무를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 경과>

구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추진 주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추진 내용	중소기업·노동·환경·국 도하천·항만수산·식의 약품 등 분야 특별지방 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	(1단계) 국도하천·해 양항만·식의약품 지방 이관 추진 (2단계) 노동·환경·산 림·보훈·중소기업 지 방이관 추진	이명박 정부가 발굴한 특별지방행정기관 89 개 사무 이양추진	중복·집행·지역적 사무에 대한 시·도 이관 추진, 특별지방자 치단체 설립 통한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업 제도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추진 및 TF 운영
주요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국도관리·중소기업·해 양수산·보훈·환경·노 동 등 지방이관완료	1단계 완료(2010.6.) - 일부 집행사무지방이관 - 인력 208명 및 예산 3,969억 원동반이관 (2단계)미완료 - 7개 지방환경청 출 장소 폐지 외성과 부재	실질적 성과 부재	실질적 성과 부재	실질적 성과 부재

출처: 윤태웅 (2023:15) 내용을 수정 및 보완

□ (쟁점 4)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보전은 가능한가?

-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보전이 필수적이지만, 제1차 및 제2차 일괄이양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 재정 보전이 제외됨³⁾
- 신규 발굴 및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도 단기적 방식(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형식)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
- 향후 지방일괄이양 과정에서 재정지원 원칙 수립과 별도의 계정 신설(예: 지방이양교부세 등)을 통한 지원 여부 검토 필요⁴⁾

<제1차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규모>

구분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지원 총금액	• 1,549억 3,600만원	• 381억 원
금액별 세부 구성	• 사업비: 1,497억 원 • 인건비: 40억 원 • 경상비: 12억 원	• 사업비: 358억 원 • 인건비: 15억 원 • 경상비: 8억 원
지원방식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형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교부세
비용산정 주체	•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4. 요약 및 정책 제언

□ 지방일괄이양법은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입법으로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촉진

- 현재 지방자치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 권한이양을 받을 방법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유일
- 일본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기관 위임사무 제도 폐지,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대전환 시작⁵⁾
- 특히, 우리나라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무발굴 발굴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되기 시작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 3) 비용보전 대상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제외된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 일부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박관규, 2020)
- 4) 김흥환(2021)은 지속적 사무이양에 따른 안정적 재원보전으로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그에 따른 실질적 재원보전은 '분권교부세' 특례 방식을 제안
- 5) 지방분권일괄법 자체는 사무 권한 이양에 집중됐으나, 이러한 기반 구축이 곧바로 삼위일체 개혁(국고보조금 삭감, 지방교부세 검토, 세원 이양)이라는 재정분권 논의로 확장됨

- 그동안 간헐적으로 시도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노력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무를 왜 이양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특례시 차원에서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대도시 권한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

- (제언1) 도시 규모와 역량을 반영한 '차등 이양'의 제도화
 - 이양 대상의 명확화: 권한 이양 대상을 설정할 때 자치계층(시·도)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특례시 등)를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특례'를 제도적으로 안착
- (제언2) 단위 사무를 넘어서 '기능 중심 포괄 이양'
 - 기능중심 포괄 이양: 지역경제 관련 일부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사무 전체를 자치단체로 포괄 이양하도록 제도적 개선 건의
 - 이양 사무의 질적 개선: 단순 집행사무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기획할 수 있는 사무 확보 추진
- (제언3)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보전 기제' 구축
 - 지방이양교부세(가칭) 신설: 단기적인 보조금 방식(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이나 교부세 특례 도입
 - 비용 산정의 정밀성 확보: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실제 사무 수행에 드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 투입되는 비용을 정밀히 산정하여 특례시의 재정 부담을 방지
- (제언4) 권한이양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긍정적 여론 조성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권한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시 차원에서도 긍정적 여론 확산 시도
 - 사무이양 효과 진단: 사무 이양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예: 시민체감 사항)을 자세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

■ 참고문헌

- 김홍환. (2021).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의 쟁점과 대안. Tax Issue Paper-50. 한국지방세연구원
 뉴시스 (2025.12.9), 與 한정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지방이양일괄법 등 적극 추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3570 (검색일 '26.7.7)
- 이미애·안지선. (2023).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이슈브리프-07. 인천연구원
- 박관규. (2020). 지방일괄이양사무의 비용평가와 재원보전방안. 분권레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연구원. (2026). 민선지방자치 30주년 회고와 전망. 서울연구원.
- 소순창. (2003).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4): 253-274.
- 주희진·고경훈·전대욱·유수동. (2024).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기본보고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윤태웅. (202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하혜영. (2020). 지방이양일괄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651호. 국회입법조사처
- 홍준현·라휘문·조경훈·박지형·문동진·김미선. (2023). 지방이양 완료사무 현황 및 성과평가체계 연구.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5).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https://www.mois.go.kr/frt/bbs/type014/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aESN34jXSqAAqNMU5w85LjvNmBhuZxhShhXS-Zk-.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3&nttId=122612 (검색일: '26.7.7)

SRI Brief | 발간목록

호수	집필자	제목	발간일자
제119호	변미리,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시민의 웰빙과 공동체 역량	2026.01.06.
제120호	민보경, 박민진	(도시정책지표연구) 인구이동을 통해 본 수원의 인구 특성	2026.01.15.
제121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3대 가을 축제 외국인 참여 특성과 시사점	2026.01.20.
제122호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과 서울의 도시정책지표 비교와 함의	2026.01.27.
제123호	양은순, 박민진 등	쑤저우에서 시작된 도시혁신: 장신성(章新勝) 리더십과 중-싱 협력의 확산	2026.02.03.
제124호	박민진, 장정식	수원 3대 가을 축제 온라인 반응 및 글로벌 홍보 전략 제안	2026.02.10.
제125호	박민진, 박영미 등	SRI 시민패널 기반 축제 참여행태 분석	2026.02.19.
제126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시민의 생활체감과 2026년 경기 전망	2026.02.24.
제127호	정재진	수원 중고차 산업 효과 분석과 특화 발전 방안	2026.03.03.
제128호	박민진, 박영미 등	행복 수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의 삶의 격차	2026.03.10.
제129호	김도훈, 이지원 등	다목적 모빌리티를 통한 '수원형 N분 도시' 실현 전략	2026.04.14.
제130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X세대 심층분석	2026.04.21.
제131호	박민진, 채우리 등	수원시 1인가구의 현주소 : 다인가구와 다르고, 세대마다 또 다르다	2026.05.04.
제132호	최도인, 박민진 등	로컬이 글로벌이 되는 방정식:K-컬처 시대 수원 3대 가을 축제의 세계화 전략	2026.05.12.
제133호	김유빈, 최석환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수원형 중립형 R&D허브 구축 방향	2026.05.19.
제134호	정다래	마곡 R&D클러스터의 선도기업 유치 전략과 수원시 적용 방향	2026.05.26.
제135호	박민진, 박영미	두 개의 봉우리, 두 개의 과제: 수원시 인구 구조로 본 일자리 정책 고도화 방향	2026.06.09.
제136호	김진언	수원시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가격 전망	2026.06.16.
제137호	강은하, 오미현 등	폭염 대응의 전환점: “재난 관리”에서 “열 회복력 도시”로	2026.06.23.
제138호	양은순, 임채실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2026.07.6.
제139호	정란수, 신한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쟁점과 정책제언	2026.07.14
제140호	박진우, 최석환 등	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수도권 정책제언	2026.07.20.
제141호	허경재	주거실태조사 20년, 수원시 현황과 과제	2026.07.28.
제142호	김도훈	수원시 생활권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026.08.0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